

담	당	결	재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은행(이하 "수탁자")은 다음과 같이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객(위탁자)와 은행(수탁자)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뒷면(첨부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고객별로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신탁재산의 미운용시 고유계정대로 운용되므로, 운용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용시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음)



■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필수	최초 신탁금액	금 원	(₩)
	신탁기간	개월	※ 월단위 (최소 36개월 이상)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 당행 본인 입출금계좌 (MMDA 등 제외)
	운용내역통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해피콜	<input type="checkbox"/> 유선해피콜(☎1599-4200)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해피콜 (LMS URL)	
선택	비밀번호 재사용	<input type="checkbox"/>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동일 비밀번호	성명 : _____ 서명(인)

■ [별표1]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즉시매수 / 예약매수 / 적금매수]

운용상품종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원) / 운용비율(%)	운용상품위험도

※ 본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금융회사 중복가입여부,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한도 확인 (가입시점 및 매 분기 단위 조회) 등을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서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계약서류 등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탁자

■ 수탁자

주 소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성 명 : _____ 서명(인)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주식회사 우리은행
 _____ 서명(인)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은행보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약관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은행(이하 "수탁자")간에 특정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 제2조(약관종합자산관리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인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정기집합투자증권지급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정기집합투자증권지급 목적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인 것

$$\frac{2천만원 \times [1+가인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누적납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 함)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5.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놓여진(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총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높은 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만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3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정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의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1」의 특정증권신탁 운용지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한다. 수탁자는 이 방식에 따라 신탁재산의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약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증거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 |
|--------------------|--------------------------|
| 1. 집합투자증권 |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
| 2. 파생결합증권(주1) | 7. 주권상장발인의 주식 |
| 3. 환매조건부채권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
|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9. 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 5. 예금, 적금, 예탁금(주2) | 9. K-OTC주식(중소, 중견기업에 한정) |

주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채권
주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종료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좌를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용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법정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 특성을 표시한다.

제13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후취로 납입한다. 이 경우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이라 함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 위탁자가 지정한 신탁재산별 일일 평가금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보수율	
※ 운용상품별 신탁보수율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채권	연 0.2%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채권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 연 0.1%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일수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종료일일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일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2.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날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의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일수이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업중단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든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좌를 처분하기 관련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거나 기타 사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신탁계좌를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정이 불가하여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납입하며, 해당 소득은 추정발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신탁보수 및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1/2로 계산한다. ⑤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이 만기가 되는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관련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이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정이 불가하여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최종계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서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

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기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금전을 지체없이 운용하는 데 동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유를 안 날(위반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준 고액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규 대비 등)을 변경예정일 20일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재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기초 고액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규 대비 등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약관(이하 본 통에서 "약관"이라 함)을 영업장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관한 효력이 있을 때

제25조(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관계법규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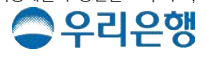
제30조(약관외 등 준용)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에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른다.

①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령」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1조(신탁계약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특정증권신탁 운용지시서
귀사와 특정증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신탁계약 운용방법은 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서의 「별표1」 특정증권신탁 운용지시서를 따릅니다.



담	당	결	재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은행(이하 "수탁자")은 다음과 같이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객(위탁자)와 은행(수탁자)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뒷면(첨부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고객별로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신탁재산의 미운용시 고유계정대로 운용되므로, 운용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용시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음)



■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필수	최초 신탁금액	금 원	(₩)
	신탁기간	개월	※ 월단위 (최소 36개월 이상)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 당행 본인 입출금계좌 (MMDA 등 제외)
	운용내역통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해피콜	<input type="checkbox"/> 유선해피콜(☎1599-4200)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해피콜 (LMS URL)	
선택	비밀번호 재사용	<input type="checkbox"/> 만기해지금 수령계좌 동일 비밀번호	성명 : _____ 서명(인)

■ [별표1]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즉시매수 / 예약매수 / 적금매수]

운용상품종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원) / 운용비율(%)	운용상품위험도

※ 본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금융회사 중복가입여부,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한도 확인 (가입시점 및 매 분기 단위 조회) 등을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의 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서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계약서류 등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탁자

■ 수탁자

주 소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성 명 : _____ 서명(인)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주식회사 우리은행
 _____ 서명(인)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약관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우리은행(이하 "수탁자")간에 특정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인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정기집합투자증권투자회사가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정기집합투자증권투자회사의 계약금액 총액을 한도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인 것

$$\frac{2천만원 \times [1+가인 \text{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누적납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놓여진(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총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높은 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만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3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정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의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1」의 특정증권투자업자(이하 "투자업자"라 함)에게 위탁한다. 위탁자는 이 방식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업자"라 함)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증거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에도 운용할 수 있다.

- | | |
|--------------------|--------------------------|
| 1. 집합투자증권 |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
| 2. 파생결합증권(주1) | 7. 주권상장발행인의 주식 |
| 3. 환매조건부채권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
|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9. 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 5. 예금, 적금, 예탁금(주2) | 9. K-OTC주식(중소, 중견기업에 한정) |

주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채권
주2)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종료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② 위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1회분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용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법정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 특성을 표시한다.

제13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후취로 납입한다. 이 경우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이라 함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 위탁자가 지정한 신탁재산별 일일 평가금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 보수를	
※ 운용상품별 신탁보수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채권	연 0.2%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채권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 연 0.1%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자의 지급일 또는 종료일에서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 및 신탁원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에서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2.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날

② 신탁이익의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의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신탁자의 퇴직
3. 사업중단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관련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거나 기타 사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정이 불가하여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납입하며, 해당 소득은 추정발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제2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신탁보수 및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가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따로 부과한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1/2로 계산한다.
⑤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이 만기가 되는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관련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이 처분하여 현금화가 될 수 있더라도 가격조정이 불가하여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최종계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서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

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하 "관련 규정"이라 함)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기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금전을 지체없이 운용하는 데 동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하 "관련 규정"이라 함)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한하여 계약체결일에 대한 만기시점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만기시점을 안 날(이하 "만기"라 함)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준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규 대비표 등)을 변경예정일 20일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장(이하 "영업장"이라 함)에 비치된 컴퓨터 화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재에 따라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사항이 어려운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기준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규 대비표 포함)하여야 하며,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된 내용(이내)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약관(이하 "본 약관")에서 "약관"이라 함)을 영업장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권, 대인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생명·상호·주식·보험·화재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관한 의사를 통지받은 경우

제25조(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계약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관계법규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현금금융투자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이라 함)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약관외 등 준용)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른다.

①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1조(신탁계약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특정증권투자업 운용지시서
귀사와 특정증권투자업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은 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서의 「별표1」 특정증권투자업 운용지시서를 따릅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원금
손실가능
상품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본 설명서는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 외 판매사가 고객님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정보는 교부 받으신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 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이행확인
(판매직원 날인)

가입하신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직원 성명


서명 (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ISA) : 신탁형ISA란 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정기간동안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신탁상품입니다.

1.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ISA 신탁형은 편입된 운용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편입자산의 운용자산 설명서를 통해 운용자산이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에·적금 운용시

구 분	특 징
예금자보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
위험등급 6등급 (매우낮은위험)	위험등급의 의미 : MMT,(타)금융기관 예/적금 유의사항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유동성 위험	본 상품은 계약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2) 투자상품 운용시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가입 유의사항
	투자대상자산 기준	97.5% VaR모형	수익률 변동성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25% 초과	위험선도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25% 이하	투자원금의 보존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15% 이하	투자원금의 보존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1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5%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0.5%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투자대상자산 및 97.5 VaR 또는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의 의미는 집합투자기구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일간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발생가능한 최대 예상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투자대상자산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의미합니다.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은 재산정 시점에 따라 '97.5% VaR' 또는 '수익률 변동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유동성위험	ISA 신탁형 내 운용자산의 유동성 위험은 투자성 상품의 개별자산에 따라 '중도해지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니 개별 운용자산의 설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2. 고객님의 권리 보호 사항 안내

구분	내용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 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small>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small>						
구속성 관련 사항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 · 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가입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예금상품 관련사항	2020년 9월 28일 제정된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기준」의거, 비예금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상품별/고객별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안내 [고난도 금융상품 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 · 재화등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금전 · 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WON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안내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행이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고객센터(☎02-2008-5000) 및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피콜 안내	<table border="0"> <tr> <td>[영업점 가입]</td> <td>[비대면 가입]</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해피콜(전화로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1일 2회 2영업일 동안 전화(9:00~18:00) ☎ 해피콜 발신번호 : 1599-4200 온라인 해피콜(문자를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당일 문자 발송되며, 미응답 시 다음 영업일에 추가 1회 재발송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연결되는 해피콜 화면에서 해피콜 실시 가입일에 해피콜 미진행 시, 다음 영업일에 문자 발송되며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td> </tr> </table>	[영업점 가입]	[비대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해피콜(전화로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1일 2회 2영업일 동안 전화(9:00~18:00) ☎ 해피콜 발신번호 : 1599-4200 온라인 해피콜(문자를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당일 문자 발송되며, 미응답 시 다음 영업일에 추가 1회 재발송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연결되는 해피콜 화면에서 해피콜 실시 가입일에 해피콜 미진행 시, 다음 영업일에 문자 발송되며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영업점 가입]	[비대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해피콜(전화로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1일 2회 2영업일 동안 전화(9:00~18:00) ☎ 해피콜 발신번호 : 1599-4200 온라인 해피콜(문자를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당일 문자 발송되며, 미응답 시 다음 영업일에 추가 1회 재발송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연결되는 해피콜 화면에서 해피콜 실시 가입일에 해피콜 미진행 시, 다음 영업일에 문자 발송되며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p>Q. 신탁형ISA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요? A. ISA 만기 3개월전부터 전영업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840개월(월단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p> <p>Q. 신탁형ISA 내에서 운용하는 정기에 · 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p> <p>Q. 신탁형ISA 세제혜택은? A.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좌의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되어야 비과세가 되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다른 운용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Q. 신탁형ISA의 신탁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시 후취로 납입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div> <p>※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예금 · 적금 ·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td> <td style="text-align: right;">연 0.1%</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td> <td style="text-align: right;">연 0.2%</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td> <td style="text-align: right;">연 0.6%</td> </tr> </table> <p>※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 연 0.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선취판매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부과되는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펀드)이 편입되면,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취하지 않고 펀드보수가 부과됩니다. (신탁보수 별도) * 펀드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p>	● 예금 · 적금 ·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예금 · 적금 ·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원금
손실가능
상품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을 말하며, 고객(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우리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과의 특별한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금전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관리·처분 등을 하는 계약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설명

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18에서 정한 별도의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p>※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국내거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한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p>
위탁자 및 수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입니다.-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을 수령하는 자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입니다.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기간은 3년 이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입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금융상품의 구조는 해당상품별 상품설명서, 약관 및 세부내용에 따릅니다.
부적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의 가입대상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등재된 가입자의 최종주소 또는 연락처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향후 은행에 등재된 주소와 연락처가 상이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 사전에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수탁자(은행)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적격자 확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가입자의 경우, 관계법령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에 의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을 추징하게 됩니다.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
계약해지(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은 일부해지가 불가합니다.- 단,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별 특성에 따라 중도인출 세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운용 중인 계약 만기 시점에 매도일이 가장 긴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일괄 매도되어 만기해지금 수령계좌로 자동입금 처리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신청시 보유중인 운용자산을 모두 매도하여야 하므로 중도해지를 신청한 당일은 해지자금 수령이 불가하며, 운용자산에 따라수익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 사유(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주)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주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수탁자(당행)의 영업정지·파산- 신탁형ISA 본인계좌 담보대출(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전을 인출하는 경우는 해당 인출에 신탁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기일부터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매도 종료일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빠른 날까지 부여되며, 그 이후부터 위탁자의 실제 계좌 해지일까지는 일반과세 처리됩니다.- 신탁형ISA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p>세제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다른 운용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계좌의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되어야 비과세됩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ISA 계좌를 해지하여 60일 이내에 ISA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내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과세(15.4%)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로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최종 납입가능 금액이 산출되며 잔여한도가 없는 경우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최종 납입가능 금액 = 최소값 [A.세금우대저축한도, B.ISA 납입한도] - ISA 기납입금액</p> <p>A. 세금우대저축한도 : [1억-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한도금액 ×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잔여기간]</p> <p>※ 재형 및 소장의 총 가입기간은 연장여부와 등과 무관하게 10년으로 간주</p> <p>B. ISA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전년도 미납분 이월 가능, 최대 1억원)</p> <p>※ 전년도 미납분: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 누적납입금액 (예시)</p> </div> <table border="1" data-bbox="280 824 1517 1016"> <thead> <tr> <th rowspan="2">보유계좌</th> <th rowspan="2">개설일</th> <th rowspan="2">한도</th> <th rowspan="2">만기일(10년)</th> <th rowspan="2">납입금액(누적)</th> <th colspan="2">2021.01.02 기준</th> </tr> <tr> <th>잔여기준</th> <th>한도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재형저축</td> <td>2015.01.02</td> <td>300만</td> <td>2025.01.02</td> <td>-</td> <td>17분기</td> <td>5,100만</td> </tr> <tr> <td>소장펀드</td> <td>2015.03.04</td> <td>600만</td> <td>2025.03.04</td> <td>-</td> <td>5년</td> <td>3,000만</td> </tr> <tr> <td>ISA</td> <td>2018.05.06</td> <td>200만</td> <td>2026.05.06</td> <td>1,000만</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2021.01.02. 기준 ISA 납입 가능 금액(위의 ISA 최종 납입가능 금액 계산방식 참조)</p> <p>① 1억 - (재형 한도 합계 5,100만 + 소장 한도 합계 3,000만) = 1,900만원</p> <p>② 8천만원(연간 2천만원, 4년차 계좌) → 최소값(①1900만원, ②8천만원) - ISA기납입금액 1000만 = 900만원</p>	보유계좌	개설일	한도	만기일(10년)	납입금액(누적)	2021.01.02 기준		잔여기준	한도합계	재형저축	2015.01.02	300만	2025.01.02	-	17분기	5,100만	소장펀드	2015.03.04	600만	2025.03.04	-	5년	3,000만	ISA	2018.05.06	200만	2026.05.06	1,000만	-	-
보유계좌	개설일						한도	만기일(10년)	납입금액(누적)	2021.01.02 기준																					
		잔여기준	한도합계																												
재형저축	2015.01.02	300만	2025.01.02	-	17분기	5,100만																									
소장펀드	2015.03.04	600만	2025.03.04	-	5년	3,000만																									
ISA	2018.05.06	200만	2026.05.06	1,000만	-	-																									
<p>신탁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시 후취로 납입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p> </div> <p>※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p> <table border="1" data-bbox="280 1285 1477 1375"> <tr> <td>●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td> <td>연 0.1%</td> </tr> <tr> <td>●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td> <td>연 0.2%</td> </tr> <tr> <td>●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td> <td>연 0.6%</td> </tr> </table> <p>※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 연 0.1%</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선취판매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부과되는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펀드)이 편입되면,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취하지 않고 펀드보수가 부과됩니다.(신탁보수 별도)</p> <p>* 펀드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p>	●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p>만기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은 신규일로부터 36개월 이상 84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자가 정하며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횡수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시,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입유형이 변경되며 가입요건에 따라 가입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장된 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유형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가입유형이 변경되어 세제혜택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만기연장 전 서민형인 경우 만기연장 후 일반형 자격으로 변경되면 만기 해지 시 최초 신규일부터 소급적용되어 비과세 200만원(일반형)이 적용됩니다) -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p>계약서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는 특정증권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의 고객 기재사항은 위탁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서 1부를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p>운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계좌 신규(입금)시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으로 입금되며, 별도의 운용지시가 필요합니다. -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운용합니다. - 운용지시 가능자산은 조특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으로 합니다. - 운용지시는 접수 후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계좌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용상품의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 매수 · 매도 시 결제일 시차 발생,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으로 운용되며, 이 경우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항목」 을 운용상품별 상품설명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담보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 중인 신탁재산의 종류 등으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정기예금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의 매 만기 시에 「최초 계약 기간」 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다만,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 초과 등을 사유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 매도되거나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대체되어 자동 재예치 될 수 있습니다. - 재예치 시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예치된 정기예금의 만기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만기를 초과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해지시 해당 정기예금은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정기예금은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상품은 계약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ISA 내 정기예금의 만기도래 전 정기예금 매도지시(보유상품변경 및 중도인출 등)시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p>구속행위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 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가입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위법계약 해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위법 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p>청약철회제도 안내 [고난도 금융상품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 · 재화등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금전 · 재화등의 반환이 늦어 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서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WON뱅킹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자료열람 요구권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요구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p>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 고객센터(☎02-2008-5000) 및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원금
손실가능
상품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내사항

가입요건	<p>■ 위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별도의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이 신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정한 별도의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과세특례	<p>■ 위탁자는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위탁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과세특례 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에서 정한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위탁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별도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p>
계약해지	<p>■ 위탁자는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위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 또는 신탁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 변경 및 계약의 해지 제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정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p>
운용내역 통보	<p>■ 수탁자는 매분기 1회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p> <p>수탁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그 다음달 말까지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운용내역 수령을 원하지 않아 신탁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운용내역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p>
금융상담 서비스	<p>■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업자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조회서비스 제공	<p>■ 수탁자는 종합자산관리신탁재산의 운용내역(운용종목 및 비중 등) 및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종합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내역 및 신탁재산의 평가금액을 인터넷 등의 전산매체, 영업점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의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p>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